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965
----------	-----

2019년 9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19년 8월 7일
- 다. 회부일자 : 2019년 8월 13일
- 라. 상정결과 :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9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가. 제안이유

-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인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이 2019.12.31.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규정 신설('12.3월) 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11.8월)했으며, '19년 3월 개정된 동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사무명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2) 시설개요

- 시설명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33번지
- 시설규모 : 752.9㎡ (다목적홀, 음악·무용연습실 등)
- 개관일자 : 2012.6.1.

(3) 위탁기간 : 2020.1.1.~2022.12.31.(3년)

(4) 민간위탁금(안) : 302백만원('20년 기준)

(5) 위탁사무

- 시설물 및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 거점 지원센터 조성 운영
- 시 아마추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6)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7)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및 아마추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기타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 위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다.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2) 예산조치 : '20년 예산 편성필요

(3)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 동 동의안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공간인 신도림 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로부터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 2011년 4월 서울시 문화관광기획관(現 문화본부)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쉽게 접하고 생산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시민 및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고자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1)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동 계획은 특히 지역 문화발전 기반체계를 구축하고, 도심형 공동체

1) 서울시는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의 구성요소로 공간(Space), 사람(People), 콘텐츠(Contents)와 같은 기존의 3요소 외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담은 제4의 대안적 요소를 상정하고, 동 계획을 통해 마련되는 문화공간은 ① 언제나 접속가능한 친밀한 공간, ② 주민 동아리와 다양한 분야의 만남의 공간, ③ 사용자가 완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음.

모델을 제시한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신도림역과 테크노마트 사이 지하통로 및 휴게시설의 1,385㎡ 공간을 시범조성지로 지정하였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민간위탁 사무가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 민간위탁 사무는 2011년 8월 구로문화재단이 수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이 시작된지 8년만에 최초로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임.

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잦은 변화로 인한 것으로 최초로 동 민간위탁 사무가 시작된 2011년 8월에는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으며, 2014년 1월 민간위탁 제1차 재위탁 시에는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보고만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었고, 2017년 1월 제2차 재위탁 시에는 민간위탁 4회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음.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변동사항

신도림고리 사무변동사항	조례 변동사항
2011.8. 민간위탁 사무시작	2009.7.30.개정, 2010.1.1.시행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u>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u>
2014.1. 제1차 재위탁	2013.8.1.개정, 2013.8.1.시행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

	<p>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u>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u></p>
2017.1. 제2차 재위탁	<p>2016.1.7. 개정, 2016.1.7.시행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u>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매 4회 차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2020.1. 제3차 재위탁(예정)	<p>현행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u>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 한편 서울시는 2016년 10월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는데, 특히 동 조례는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따라 생활밀착형 제4의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던 신도림고리를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중 하나로 상정하고, 신규로 건립된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2018년 3월 개관) 및 뚝지 생활문화지원센터(2019년 12월 개관 예정)와 함께 ‘생활밀착형 생활문화지원센터’로 구분하였음.

- 현재 신도림고리는 2017년 1월부터 자치구 출자·출연기관인 구로문화재단에서 수탁하여 운영 중이며, 2019년에는 고리를 신규 동

아리 발굴 및 이용촉진과 기획·상설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문화지원 센터 브랜드로 구축하고자 하였음.

물론 신도림고리가 최초에 목적하였던 ‘지역문화 활성화’는 ‘생활문화 활성화’와 목표가 동일하므로 서울시 생활문화지원센터 중 하나로 운영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²⁾, 신도림고리의 연간 운영·기획 프로그램의 횟수는 총 15회 미만으로 적은 편에 속하고, 주 운영방향이 대관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문화를 증진·공유하는 시설에서 지원하는 시설로 격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임.

신도림고리 프로그램 현황(2019년)

2019.6월 기준

명 칭	내 용	목 표	성 과
감성식탁	생활문화 동아리 대상 소셜 다이닝 프로그램	월 1회	5회
모두의전람회	생활문화 미술 동아리 전시 발표	분기별 1회	2회/3분기 진행중
고리DAY	생활문화 공연 동아리 공연 발표	연 3~4회	2회
고리기획전시	시민참여 전시 프로그램	대관없는 기간 상시운영	2회
생활문화주간 축제	생활문화동아리 축제 진행	연 1회	10월 예정

2019년 서울시 민간위탁 성과보고서에는 신도림고리의 보완과제로

- ① 생활문화지원센터의 특색을 살리는 상설전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고, ② 다목적홀, 연습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방안 마련

2)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정의)는 “지역문화”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생활문화”를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과 ③ 돌발상황 발생에 대한 예방책 필요 및 센터 보안사항을 철저히 요구하였음.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 문화본부는 신도림고리 운영에 있어 민간위탁 기관의 운영방향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정체성을 꾸준히 유지해야 하겠으며, '생활문화'를 효과적으로 증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개발·확충 및 예산 수반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설의 편의성 증대, 노후시설의 교체, 안전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5
----------	-----

제출년월일 : 2019년 8월 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공간인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의 민간위탁기간(3년)이 2019.12.31.자로 만료될 예정으로
- 나.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의회동의 규정 신설('12.3월)이전에 위탁사업을 개시('11.8월)했으며, '19년 3월 개정된 동 조례에 근거하여 재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운영
- 나. 시설개요
- 시설명 : 신도림고리 생활문화지원센터
 - 소재지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3-33번지
 - 시설규모 : 752.9㎡ (다목적홀, 음악·무용연습실 등)
 - 개관일자 : 2012.6.1.
- 다. 위탁기간 : 2020.1.1.~2022.12.31.(3년)
- 라. 민간위탁금(안) : 302백만원('20년 기준)

마. 위탁사무

- 시설물 및 재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생활문화 거점 지원센터 조성 운영
- 시 아마추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바.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본 사업은 문화시설의 관리·운영 및 아마추어 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기타 시민 문화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무를 포함하고 있음
- 위 사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전문 지식 및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 확충 및 지원)
-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나. 예산조치 : '20년 예산 편성필요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시민문화팀 박진영 (☎ 2133-2542)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8조(센터 설치·운영 등)

-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생활문화지원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문화향유 및 체험활동, 전시, 공연 등을 위한 문화 공간 조성 및 운영
 - 2. 생활문화단체 및 동아리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연합회 구성 및 운영 지원
 - 3.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
 - 4.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
 - 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 문화·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